「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1. "반출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	ㅇ반출신고 근거 신설(법 제
<u>으로</u>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	역 입주기업체에서 반출하거나 자유	37조제1항) 반영 및 반출
법」 제157조에 따른 <u>반입신고를</u> 말	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입신고의 개념 명확화
한다.	<u>신고를</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외반출신고"란 외국물품 등을 <u>국</u>	3 <u>자</u>	ㅇ국외반출신고의 성격 재
외반출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	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기 위	정의
법」의 반송신고와 동일한 성격의 신	<u>한</u>	
고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잉여물품"이란 <u>제조·가공작업</u> 으로	5 <u>제조・가공작업 등</u>	ㅇ제조업 외 (복합물류)창고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업에도 잉여물품 발생 가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u>L</u>
않는 원재료와 제품(제조물품의 전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포장재・운반용품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u>.</u>	
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	6	ㅇ인용법명 명확화
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법 제2	「자	
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	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	7	ㅇ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이하 "GDC"라 한다) 반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입물품에 대한 내수통관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	고객주문	(B2B 방식) 허용 반영
· 보관 · 재포장 후 <u>국제배송</u> 을 하는	<u>배송</u>	
물류센터를 말한다.		
<u><신 설></u>	8. "상품코드"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	ㅇGDC 등 물품단위 재고관
	업체에 반입되는 물품의 재고관리를	리가 필요한 경우 상품코

현 행	개 정 안	비고
	위하여 최소 모델규격단위별로 자체	드를 부여하여 관리
	부여한 고유값을 말한다.	
<u><신 설></u>	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소비	ㅇGDC 반입물품에 대한 물
	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	품단위 재고관리를 위한
	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	신고방법
	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	
	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제3조(적용범위) ①	ㅇ조문 정비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		
동 등에 관한 사항은 <u>「자유무역지역</u>	<u>법</u>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u>"법"이라 한다)</u>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		
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		
세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 0	<u>'</u>
②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반입하기	2	○법 제3조제1항(「관세
이전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		법」과의 관계) 개정사항
한 이후의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		반영
하역절차 <u>등은</u> 「관세법」을 적용한다.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	
	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u><신 설></u>	③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	ㅇ법 제3조제1항(「관세
	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	법」과의 관계) 개정사항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한 통	반영
	관절차상 혜택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	
	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	
	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	
	을 적용한다.	
제5조(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① 세관	제5조(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① 자유	ㅇ법 제16조의2(입주기업체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	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관리부호의 발급) 신설 반
로부터 입주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에서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영
동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기업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관할 세관장에	

현 행	개 정 안	비고
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물품관리를	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발급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	하여야 한다.	
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체관리 부		
호(장치장소부호를 겸한다)를 부여하		
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장치장	
	소부호를 겸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	
	여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입주내	
	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⑥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현 행	개 정 안	刊	고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1년의 유예		
	<u>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을 B등급 이상</u>		
	으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한다.</u>		
	1.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u> 부호 삭제</u>		
	2. 2년 이상 외국물품등의 반입실적이		
	없어 입주기업체관리부호가 필요하		
	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호 삭제		
	3. 품목단위 재고관리 입주기업체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		
	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C등		
	급 이하를 부여받은 경우: 별표 1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를 77	
	<u>또는 75로 변경</u>	
<u> <신 설></u>	⑦ 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해당 입	
	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삭제하는 경우	
	에는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	
	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생 략)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7호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u><</u> 삭 제>	ㅇ조문내용 이동(제41조)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물품을 반		
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반입신고 외에 별지 제3호의2서식		
에 따라 품목단위 반입신고서를 세관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	6	ㅇ세관 검사대상 물품인 경
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		우 보세운송신고인에게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보고는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로 <u>갈음</u>	<u>갈음</u>	도착보고 의무 명확화
하며, 그 반입신고는 보세운송기간내에	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u>하여야 한다</u> . <u><단서 신설></u>	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	
	은 고시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	
	<u>다.</u>	
⑦・⑧(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제7조의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ㅇ어색한 표현 수정
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		
유무역지역에 반입한 <u>외국물품 중</u> 자	외국물품을	
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		
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를 하여	②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u>법 제29조제4항제2호</u> -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		

현 행	개 정 안	비고
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사용소비신고의 심사와	⑥	ㅇ조문 정비
관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		
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u>제8절</u> 의 전자통관심사 규	<u>제2장제8절</u>	
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반입된 원	체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재료를 공휴일 또는 야간 등 세관 개청	
	시간 외에 먼저 사용·소비하고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소비신고하게 할 수	

현 행	개 정 안	비고
	있다. 이 때 해당 입주기업체는 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소비한 물품에 대	
	해 보세사가 자체 기록 유지하고 기	
	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	
	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	
	수업체인 자	
	2. 「관세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입	
	주기업체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	
	에 대한 국외반출신고금액 비중이 5	
	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국외반출	
	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u>자</u>	

현 행	개 정 안	비고
	4. 반출입, 제조・가공, 재고관리 등 업	
	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	
	<u>을 제공한 자</u>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①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		
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하 <u>환급사무처리고시</u> 라 한다) 제5장	"환급사무처리고시"	
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		
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		
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		
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		

현 행	개 정 안	비고
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	③ 법 제29조제3항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		
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제10조(수입신고) ① <u>법 제29조제4항</u>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u>제4항</u> 에 따른	<u>제5항</u>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		
를 하고 <u>「관세법」</u> 제248조 또는 제25	<u>같은 법</u>	
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1조(국외반출신고 등) ① 영 제19조에	제11조(국외반출신고 등) ①	ㅇ용어 통일
따른 국외반출신고는 <u>수출통관시스템</u>	관세청 전자통	
및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관시스템	
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4	ㅇ띄어쓰기 수정
경우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u>「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u>	
<u>고시」중</u> 적재절차를, 국제무역기에 항	시」 중	
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u>「항공</u>	「항공기용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중 적재	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절차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u>허가는</u>	<u>"허가"는</u>	
<u>신고</u> 로 본다.	<u> "신고"</u>	
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	<u><</u> 삭 제>	ㅇ조문내용 이동(제42조)
소비신고한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대		
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를 준용하고, 물품 반출시에는 별		
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신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u>야 한다.</u>		
제12조(수출신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2조(수출신고) <u>법 제30조제4항</u>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		
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		
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하여		
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		
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 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통합물류창고의 경우 내·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		외국물품에 대해 물품단
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위 반출입신고를 하고 있
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으므로 내국물품 반출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		인 절차 생략 가능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보세</u>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	
	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	

현 행	개 정 안	비고
	창고(이하 "통합물류창고"라 한다)에서	
	내국물품의 반출입사항을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경우에	
	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	4	
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u>다</u>	<u>다만,</u>	
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신	
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u>제20</u> 조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⑤ <u>제20</u> 조제1항제3호	ㅇ인용조문 오류 수정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4조(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 ① 영	제14조(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 ①	
제23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리, 전시, <u>검사</u> 또는 불가피한 포	1 <u>검사, 중량 측정</u>	ㅇ중량 측정 목적의 일시반
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출입 허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2	
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u>정하</u>	<u>정해</u>	
여 하여야 하며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u>o</u> }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수리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	ㅇ재반입 필요성이 없다고
	시 반출된 물품이 구성품의 일부나 전	인정되는 폐기대상 물품

현 행	개 정 안	비고
	부가 교체된 경우 수리된 물품과 교체	에 대해 입주기업체가 자
	된 물품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	율관리토록 함
	입하여야 하고 교체된 물품은 잉여물	
	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된	
	물품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세관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반입하지 않	
	고 폐기처분하게 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역외작업) ①・② (생 략)	제15조(역외작업)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조공정상 동일한 역외작업장에서	ㅇ역외작업포괄신고 제도를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거나 둘	신설하여 역외작업물품의
	이상의 역외작업장 간 연속하여 작업	물류 원활화 지원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을 하려	
	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역외	
	작업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고, 역외작업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현 행	개 정 안	비고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		
	<u>다.</u>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역외작업기간	<u>④</u> 제1항 및 제3항	ㅇ역외작업포괄신고	제도
연장, 작업장소변경, 신고취하 또는 신		반영	
고내용 정정을 하려는 자는 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			
식에 의한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			
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재의 반출기			
간 연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역외			
작업 시설재 기간연장신고서에 의한다.			
<u>④</u>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한 자	<u>⑥</u> 제1항 및 제3항	ㅇ역외작업포괄신고	제도
는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별지 제9		반영	
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관장에			
게 보고하고, 역외작업기간이 만료되기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		
료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자유		
무역지역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신		
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⑥</u> 입주기업체가 <u>제1항</u> 에 따른 역외작	<u>⑦</u> <u>제1항 및 제3항</u>	ㅇ역외작업포괄신고 제도
업신고를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때에는		반영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제1항부터 <u>제3항까</u>	<u>제4항까지 및</u>	
<u>지 및 제5항</u> 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u>제6항</u>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려	⑧ 제7항	ㅇ조문이동 반영
는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장의 등록,		

현 행	개 정 안	비고
역외작업신고,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의		
반출신고, 역외작업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 및 역외작업 완료보		
고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물품의 반		
출입 신고를 전산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u>⑧</u> · <u>⑨</u> (생 략)	<u>⑨</u> ⋅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16조(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반출)	제16조(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반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②	ㅇ세관 검사대상 물품인 경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		우 보세운송신고인에게
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		도착보고 의무 명확화
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u><단서 신</u>	다만, 「보	
<u>설></u>	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관 검	
	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세운송) ①・② (생 략)	제17조(보세운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보세판매장</u>	③ <u>통합물류창고</u> -	ㅇ조문 정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		
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을 보		
세판매장, 인도장 또는 국외반출을 위		
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		
운송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u>.</u>	
제18조(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제18조(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기적) ① (생 략)	선ㆍ기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기간은 제17	②	ㅇ보세운송 및 선(기)적기간
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		연장을 최대 6개월까지
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허용하여 신고취하 등 절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차에 따른 불편 해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		
관장은 재해·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		
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6개월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③	ㅇ수출통관고시에 따른 정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		확한 용어 사용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		
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국외반출신		
고수리 <u>취하 등</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u>취소 등</u>	
야 한다.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①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해		
당 장치장소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		
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u>다만,</u> 전		ㅇ「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	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조	반출신고 지침」('22.2.8.)
출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 가공된 물품이 국외반출신고 또는	반영
제3호의4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경우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	③	ㅇ고시명 오류 수정
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		
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u>「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u>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에 관한 고시」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		
기업체"로 한다.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u> </u>	⑤ 별표 3의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ㅇ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반출기간 연장	반출기간 연장 승인 규정
	승인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미비 보완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때 연장기	
	간은 최초 반출기한으로부터 60일의	
	범위 내로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	<u>⑦</u>	
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보관화물 매각		
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	ㅇ법 개정(제37조제3항) 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	ශි
<u>⑦</u> 입주기업체는 <u>제5항</u> 에 따라 세관장	⑧ 제7항	ㅇ조문이동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고
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화주, 반입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		
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u>⑧</u> 입주기업체는 <u>제5항</u> 각 호의 어느	<u> ⑨</u> <u>제7항</u>	ㅇ조문이동 반영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		
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	<u> </u>	ㅇ고시명 오류 수정
화물의 처리절차는 <u>「보세화물장치기</u>	「보세화물장치기간	
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비고
한다.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	
리) ① ~ ⑤ (생 략)	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6	ㅇ반출입신고는 법상 의무
물품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사항이므로 "자율적으로"
는 <u>자율적으로 또는 관세청</u> 전자통관	관세청	문구 삭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반출		
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⑦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⑦ <u>통합물류창고</u>	○약칭 사용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u>통합물류창고</u> 에 반입하는 물품 중 보		
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		
리되는 물품의 재고관리 등 기록은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 ⑨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①	○행정조사 결과를 확정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
제17조, 제18조, <u>제21조 및 제22조를 준</u>	<u>제21조, 제22조 및 제2</u>	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4조를 따른다	지하도록 함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되, <u>이 때에도</u>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 <u>이때에도</u>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3조(서류의 보관) 법 제38조제4항 및	제23조(서류의 보관) <u>법 제38조제5항</u>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물품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폐기의 감독) ①·② (생 략)	제28조(폐기의 감독) ①·② (현행과 같	
	<u></u> 이	
<u><신 설></u>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	ㅇ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주기업체의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	제도를 신설하여 민원 불
	으로 가치가 없는 물품인 경우 업체의	편 해소 및 화물관리 효율
	사전 신청을 받아 자체폐기대상물품으	화 추진
	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폐기하도록	
	<u>할 수 있다.</u>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	
	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u><신 설></u>	④ 제3항의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	
	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주기업체가 자	
	체적으로 대장관리하도록 하며, 세관	
	장은 재고조사 시 이를 일괄 확인함	
	으로써 폐기신고, 폐기 시 입회확인	
	및 폐기결과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현 행	개 정 안	비고
	<u>수 있다.</u>	
제29조(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 ① 입주	제29조(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 ① (현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행과 같음)	
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즉시 세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	3.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	ㅇ조문 정비
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u>경우(신설</u>	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u>경우</u>	
2007.12.27.)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법 제4	제30조(물품의 검사) ①	ㅇ사용소비신고 근거규정
2조에 따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		신설(법 제29조의2) 반영
4조 및 제15조에 따라 반입신고하였거		
나 일시반출입신고 또는 역외작업신고		
한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u>제</u> 7조의2제1항에 따라	
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사용하여 반입	사용소비신고한	
<u>신고한</u>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검		
사여부의 통보, 검사방법, 검사절차 등		
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원재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9조	제31조(원재료 등의 범위) ①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제1항제2호, <u>제3항제2호</u> 및 법 제44조	<u>제4항제2호</u>	
의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u>제29조제1항제2호 다목</u> 의 "관세	3 <u>제29조제1항제2호다목</u>	ㅇ인용조문 오류 수정
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u>영 제</u>	<u>영 제7</u>	
7조제5항제1호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조제7항제1호	
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가 포장・보		

현 행	개 정 안	비고
수ㆍ가공 또는 조립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u>제3항제2</u>	② <u>제4항제2호</u>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호의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란 다		
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2조(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	제32조(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	ㅇ조문 정비
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 ① 법 제44조	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 ①	
후단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		
품의 원재료 <u>사용승인 신청은 별지 제1</u>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u>6호</u>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u>(신청)</u>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u>서식에 따른다</u> .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u>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제34조(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ㅇ법 개정(조문 이동) 반영
점검) 세관장은 <u>법 제29조제3항제2호</u>	점검) <u>법 제29조제1항제2호의</u>	및 입주기업체 사용소비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단서규	물품 점검대상을 내·외국

현 행	개 정 안	비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	<u>정 및 제3호의 괄호규정</u>	물품 전체로 규정
비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별		
사용명세를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자		
유무역지역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		
다.	.	
제35조(청문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청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자체 <u>「행정제재심의위원</u>	② <u>행정제재심의위원</u>	ㅇ문장부호 수정
<u>회」</u> 를 개최하여 청문결과를 검토하고	<u> </u>	
처분 여부 및 처분 수준(물품반입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 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u>「행정제재심의위원</u>	③ <u>행정제재심의위원</u>	ㅇ문장부호 수정
회_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	<u> </u>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		
관장(인천세관은 항만통관감시국장으		
로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5조제6항 및 제39조에 따른 입주	ㅇ반입정지 처분 이외에도
	기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는 제1항부터	청문 실시 근거 마련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세관장은 영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ㅇ띄어쓰기 수정
제41조 및 영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		
과징수에 관하여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	
<u>부과징수에 관한 훈령」</u> 을 준용한다.	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6장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u> 운영 등</u>	(GDC) 운영 지침」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고
<u> <신 설></u>		제38조(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기	ㅇGDC 운영업체의 기본요
		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전자상	건 규정
		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이어	
		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	
		우 세관장은 신청업체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	
		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재고관리시스템, 시설	ㅇGDC 운영업체의 관리요
		및 내부통제 등 별표 8의 화물관리역량	건 규정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③ 입주지역은 법 제5조제1호나목 및	ㅇ국제물류 유치에 유리한
		라목에 따른 지역 내로 한다.	물류 • 교통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한정
<u><신 설></u>		제39조(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관리	○GDC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부호 변경)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변경 사유('80' → '77' 등)

현 행	개 정 안	月	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규정	
	우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일		
	반 보관업 관리부호(별표 1에 따른 자		
	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77)로 변		
	경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		
	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입주기		
	업체가 운영 개시일부터 2년 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		
	<u>한 경우</u>		
	2. 상품코드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다만, 세관장이 6개월 이내의 시		
	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		
	<u>우는 제외한다.</u>		

-1 -0	n -2 .2	-1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신 설></u>	제40조(품목단위 반출입신고) ① 입주기	○GDC 물품의 재고관리를
	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	위한 품목단위 반출입신
	입된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	고 규정
	드별로 분할·보관하려는 경우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사용소비신고를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소비신고는 B/L단위로 반입된	
	외국물품에 한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상품코드별로 분할.	
	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	
	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	
	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1조(물품의 반출) ① 입주기업체가 전	○GDC 물품에 대한 국외반
	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	출신고(수출신고), 수입신
	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고 등 반출절차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물품 반출 전에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	
	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	
	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	
	업자로 할 수 있다.	
	③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	
	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제40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	
	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④ 입주기업체가 유통기한·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	
	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현 행	개 정 안	비고
	따른다.	
<u> <신 설></u>	제42조(특송·우편물품 반입 등) ① 통관	ㅇ주문취소 직구물품 반입,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GDC 판매물품 반품에 따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우편물품은	른 재반입 절차 규정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외로 배송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전	
	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재반입할 수	
	<u>있다.</u>	
<u><신 설></u>	제43조(재고관리 등) ① 전자상거래 국제	ㅇGDC 운영업체의 물품재
	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판매용 물	고관리 방법 규정
	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상품코드	
	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	

현 행	개 정 안	비고
	관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와 재고관리가 가능하여야	
	<u>한다.</u>	
	② 입주기업체는 B/L단위 관리물품과	
	품목단위 관리물품을 구분 장치하여야	
	하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물품별	
	통관진행상황 등 실시간 재고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소비신고 후 분	
	할·합병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 구매자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으로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센터 반입물품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연간 재고조사 외 회계연도 반기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등 재	

현 행	개 정 안	비고
	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고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해당 세	
	액 추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u>다.</u>	
제38조(무역통계의 계상) 세관장은 이 고	<u><</u> 삭 제>	ㅇ무역통계 계상 관련 일반
시에 따른 사용소비신고를 받은 때에		규정 적용
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		
통계에 계상한다.		
<u><신 설></u>	<u>제7장 보칙</u>	
제39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	제44조(운영규정 등) ①	ㅇ조문위치 변경
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		
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관할 자		
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u> </u>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ㅇ세관장의 관세청장 보고
	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항을 신설하여 자유무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
	가 세관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한 관리 효율화 도모
	<u>경우</u>	
	2.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관	
	리부호의 발급	
	4. 법 제40조의2에 따른 물품 반입정지	
	<u>처분</u>	
	5. 그 밖에 관세청장 보고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u>제40조</u>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	<u>제45조</u> (재검토기한)	ㅇ재검토기한 수정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2년 1월</u>	<u>2023년 1월</u>	
<u>1일</u>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1일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3- 호, 2023.	
	<u>1></u>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6항제3호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자상	
	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	
	(수출입물류과-1784, '20.6.19) 중 자유	
	무역지역 내 GDC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폐지한다.	

표 3] 대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제19조 환련) 공・항만 적 용 지 역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신 한다면미널, 부산신 한다면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 한다면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 한다면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용항 화물터미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제19조 환련) 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 변경사 항(상호 변경, F7 개발 등) 반영 보형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신항 제1부두 내지 제6부두, 다목적부투 당한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 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 변경사 항(상호 변경, F7 개발 등) 반영		현행			개 정 안	月	고
대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제19조 관련) 공·항만 적 용 지 역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항 화물터미널 의정교항 화물터미널	표 3]		[별표	<u>3]</u>		ㅇ수입신고수리물	품 반출의
용·항만 적용지역 변경사항(상호변경, F) 가발 등) 반영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 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항 화물터미널	있 <i>시</i> 고수리독	문포 바총의무 및 자치기가 지정 지역(제19조 과려)	수임시고	수리물	푹 바축의무 및 장치기가 지정 지역(제19조 관련)	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 신항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입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항 화물터미널 화물러미널 화물러미널	B C 포 I 어린	2 E - C 2 M X 6 M 1 E M 1 M 1 M 1 E 1 E 1 M 1	1 4 6 4	1-12	1 CETT X 0 1712 10 1 (4XV- EE)	변경사항(상호변	경, FT
부산항 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항 남항컨테이너부두 남항 남항컨테이너부두	공·항만	적 용 기 역	곱 · 형	강만	적 용 기 역	개발 등) 반영	
- 전형 국제더미널, 인진에군 전형인터미널, (주)비엔씨티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항 화물터미널			ㅂ사하	북항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항	부산항			신항	제1부두 내지 제6부두, 다목적부두		
의 의 성공항 화물터미널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남항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	子항	화물터미널		

현 행							현 행 개 정 안									고	
[별표 7]							[별표 7]									반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										1	러빈	난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				
		豆	_			위 반 행 위	위 반 행 위 고 드 위 반 행 위										
F	1	10				법 제70조제2항제2호											
F	1	10	A	1	01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F	1	10	A	1	01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1					팀 제70조제2항제4호	F	1	30	over the c			법 제70조제2항제4호				
F	1	30	A	1	00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F	1	30	Α	1	00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F	1	30	A	ı	01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안 으로 반입한 경우 이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반입한 날로부터	F	1	30	A	1	01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안 으로 반입한 경우 ㅇ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반입한 날로부터				
F	1	30	136	1	02	- 1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F	1	30	A	17555	02					
F	1	30			03		F	1	30	Α	10000	03	-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F	1	30	A				F	1		A	1	04	-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F	1	30				법 제70조제2항제4호	F	1	30				팀 제70조제2항제4호				
		- 5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	11	60.AN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				
	1			1	01	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30	В	1	01	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 (1011200)			템 제70조제2항제5호	F	1	40				법 제70조제2항제5호				
F	1	40	A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경우	F	1	40	A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10			템 제70조제2항제6호	F	1	40	S KONSKINS	See of	Sugar	템 제70조제2항제6호				
F	1	40	В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 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 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В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 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 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텔 제70조제2항제7호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8호				
	1	40	Birmin .	1	0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	F	1	50	Α	1	0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A	1					법 제70조제2항제8호 내 레이즈네이지요 아마워스 게그모프 레이즈네지르르 레스웨이	F	1	50	8	-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9호				
F	1	50	A	1	on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F	1	50	c	1	01	법 제31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1	50	02			범 제70조제2항제9호				3			경우				
F	1	50	C	1	01	법 제31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F	1	50		11,517		법 제70조제2항제10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F	1	50	D	1	01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기간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10호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11호				
	1	2000	D	1	01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기간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F	1		В	1	0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를 위반 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	it.					85	ii 		v)							

		51.	E			위 반 🤴 위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11호
F	1	50	В	1	0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를 위반 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	1	60	A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5조를 위빈 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F	1	60	A	1	00	o 운송목적지 도착일로부터 - 1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F	1	60	A	1	02	- 3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F	1	60	A	1	03	
F	1	60	A	1	04	-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F	1	60	В	1	0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1	60	С	HI W W		법 제36조제2황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1	60	C	1		o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로부터
F	1	60	C	1	01	-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F	1 1	a)	C	1	02	-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F	1	a	č	1	04	- 5일을 초파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F	1	70	_	-	-	별 제70조제2항제12호
F	1	70	A	1	00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2	100		(#3%)	-	o 외국물품(수입신고수리물품 포함)을 반출한 날로부터
F	1	70	A	1	01	-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1	70	A	1	02	-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1 1	70	A	1	03	-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1	70		-	- T	별 제70조제2항제12호
F	1	70	В	1	01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2	20	-	200	-	법 제70조제3항제2호
F	2	20	A	1	0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니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F	2	30				템 제70조제3항제3호
F	2	30	A	1	00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F	2	30	A	1	01	o 반출기간 만료일로부터
F	2	30	A	1	02	- 1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3	- 5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4	- 10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5	- 30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6	-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F	2	40				법 제70조제3항제4호
-	820	40	20	3555	Or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국외
F	2	40	A	1	01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1.	Ë			위 반 행 위
F	1	60	A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5조를 위반
F	1	60	A	1	00	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이 운송목적지 도착일로부터
F	1	60	A	1	01	- 1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F	1	60	A	1	02	- 3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F	1	60	A	î	03	- 5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F	1	æ	A	ī	04	-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F	1	60	В	1	0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1	60	С		(**********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2항을
32	223	22	(25)	26	122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1	60	C	1	00	o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로부터
F	1	60	C	1	01	-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F	1	60	C	1	02	-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F	1	60	c	1	03	-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F	1	70	Ť	_	- VI	병 제70조제2항제12호
F	1	70	A	1	00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22	-	343	3		o 외국물품(수입신고수리물품 포함)을 반출한 날로부터
F F	1	70	A	1	01	-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1	70	A	1	02	-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1	70	A	1	03	- 5일을 학대에 만할산고를 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1	70	А		O.F.	박 제70조제2항제12호
F	1	70	В	1	01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F	2	20		-	01	범 제70조제3항제2호
F	2	20	A	1	0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F	2	20				범 제70조제3항제2호의2
F	2	20	A	1	0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
F	2	30				법 제70조제3항제3호
F	2	30	A	1	00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F	2	30	A	1	01	o 반출기간 만료일로부터
F	2	30	A	1	02	- 1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3	- 5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4	- 10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Α	1	05	- 30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6	-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F	2	40				범 제70조제3항제4호
F	2	40	A	1	0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ŀ	4]	고	
<신 설>			[별표 8]			∘ GDC	화물관리	역량	평가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기준	신설		
			1. 일반자격요	건					
			CDC 5.0 BVI	T	12-1				
			구 분	내 용	비고				
			① 결격사유	①-1.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업체자격	②-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등급 이상)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A등급) *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국제물류 유지 실적(계획)을 감안하여 조건부(2년 안에 충족)로 입주를 허용					
				②-2.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품을 GDC에 반입하여 분할재 포장 후 국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업체					
			2. 재고관리시	스템 요건					
				< 심사방향 >					
				상황, 재고현황 및 보관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직접 전산재고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심시한다.	학인				
			구 분	내 용	비고				
				③-1. B/L단위 관리 물품의 실시간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③ 세관신고 시스템 구축	③-2. 사용소비신고번호와 연계된 상품 코드단위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 가능 전산시스템 구축					
			④ 재고내역	* 상품코드별 누적관리의 경우 선입선출방식 재고상황 정리 (4-1, 사용소비신고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품목(상품코드)의 회물					
			추적관리	작업 진행상황, 재고현황 등 확인 가능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④-2. 상품코드별 반출입승인 근거번호 조회 가능 * 사용소비신고 국외반출신고, 수입신고 등			
		④-3. 상품코드별 위치(보관장, 작업장, 제품 출하장 등) 및 각 위치별 재고현황 파약 가능			
		④-4. 상품코드 색인표 생성·관리 및 세관 제공 가능 * 상품코드별 수량은 EA 단위로 관리			
	3. 시설요건	< 심사방향 >			
	시설 · 장비	(참사항왕) 위별 분류, 보관, 분류, 포장, 배송 등 물류작업에 확보, 물품의 구분관리(적치장, 작업장, 제품보관 청 나안 통제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③-1. 물류 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자가소유 또는 임차 등의 형태로 확보 가능			
	⑤ 필요 시설 장비 확보	⑤-2. 상품코드별 물품보관 시설			
		⑤-3. 보관·작업·반출대기 장소 별도 확보			
		⑥-1. 출입통제 가능 건물 소유(임차) 및 상시경비체제* 구축 (예시 : 출입증 인식, 문형탐지기, 바디스캔 등) * 외곽경계시설, 경비실 운영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시스템			
	⑥ 보안 및 출입자 통제	⑥-2. 건물 및 배송센터(GDC) 내부 전역에 CCTV 및 상시 녹화장비"등 감시장비 설치			
		* 종합감시상활실 운영, 90일 이상 녹화가능 장비 ⑥-3. 작업자·출입차량에 대한 출입자 관리대장 기록 유지			
		* (작업자) 소속, 인적사항, 연락처, 작업일시, 작업내용 등 * (작업차량) 소속, 출입일시, 운전자 연락처, 용무 등			
			I		

현	행		개 정 안		月	고
			요건 	무처리		
		구분	내 용	비고		
		1 2	⑦-1. 보세화물관리 전문 자격사(보세사) 채용	(A. 4. 6. 5. 6. 6. 6. 6. 6. 6. 6. 6. 6. 6. 6. 6. 6.		
		⑦ 업무체계	⑦-2.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상황 기록 유지 관련 일련의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의 분당, 권한, 책임 및 조치를 위한 내부 조직 및 업무수행방식 마련			
			⑦-3. 자체 재고조사 이행 계획 수립 및 품명이상, 수량 과부족 등 이상화물 발생 시 세관보고체제 구축			
			①-4. 재고상황 관리* 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서류 보관			
			* 일별, 월별, 연도별 상품코드별 재고상황 통계 및 내역 관리 등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별지 제1호의3서식>					기업체관i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접 체 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위치	□제조업 □도매·수	②전화번호 ⑥법인등록번호 출입업 □하	청 서	근거 반영	신설(법	제16조	(유민 의 의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자 지역 변 관리 부 이 이 이 첨부서류 기준지》, [담당공략 본인은 행정정보	변환 기 전 업무처리 보다 의 전 업무기업체 1 명이 건 업무처리 보다 의 공동이용을	관리에 관한 고시」 2 신청합니다. 선기 운영 임원의 인적시항(도면 및 위치도, 3, 사업 법인등기부등본, 5, 부동 내와 관련하여 「전자정	행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획서, 4 입주계(산등기부등본, 6 글 부법」 제36조 및 위의 '담당공무역 인이 해당 서류를 간	약서 4세납세증명서 없음 제38조, 제42조에 따른 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혅 행 개 정 ġ}-日] 77. <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ㅇ고시명 수정 및 근거조문 변경 반영 처리기간 처리기간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즉시 즉시 (1)신고 번호 : (3)신고세관 : (1)신 고 번 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 (2)신고일자 : (6)업체관리부호 : (6)언체관리부호 · (5)대 표자: (4)신고업체명 : (5)대표자: (4)신고업체명 : (보세구역부호) (보체구역부호) (7)사업자등록번호: (8)주 소: (9)전 화 번 호 : (7)사업자등록번호 : (8)주 소: (9)전 화 번 호 : (10)반출인 구분 (11) 반출입근거 종류 (12)반출입 근거번호 (10)반출입 구분 (11) 반출입근거 종류 (12)반출입 근거번호 (14)정정구분 (14)정정구분 (13) 취하/정정사유 (13) 취하/정정사유 (22)(17) 상품명 (18) (19) 수량 (21) 중량 (22) 단가 (18) 소량 란번호 란번호 상품코드 상품명 HS부호 수량 단가 상품코드 HS부호 (단위) (단위) (23)사용소비신고변호 (24)반출수량 (23)사용소비신고번호 (24)반출수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 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 지역 반입(반출)물품을 신고합니다. 역지역 반입(반출)물품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O O 세 관 장 귀하 O O 세 관 장 귀하 210m×297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채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신 설>	설고반호 역외자업포관 신고서 최리기간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역외작업 포괄신고 신설(제15조제3항)	제도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조문 이동 반영
선고번호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 1일 선 ①업 체 명 ②업체관리부호 고 ③주 소 인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신 ⑥작업신고번호 ②역외작업장명 고 ⑧신 고 사 항 □ 신고정정 □ 기간연장 □ 장소변경 □ 신고취하 내 용 ⑨신 고 사 유 ※ 정정신고내용 Ne ⑩신고항목 ⑪변 정 전 ⑩변 정 후	선고번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내용의 정정(취하)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내용의 정정(취하)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ㅇ조문 이동 반영
전고번호 역외작업 시설제 반출기간 연장 신고(수리)서 추시 전	전고번호 역외작업 시설재 반출기간 연장 신고(수리)서 취리기간 축시 신 ①업 체 명 ②주 소 ②업체관리부호 ② ④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③ 역외작업 전 명 ③역외작업신고일 ③역외작업전명 ③작업장주소 ③와 업 경 건 간 ③면장 반출기간 ③연장 반출기간 ③연장 반출기간 ③연장 반출기간 ②연장 발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명」 제24조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작인 ○ ○ 세관장 귀하 전부서류: 1.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 1부 2. 반출기간 연장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ㅇ조문 이동 반영
일련번호 역 외 작 업 완 료 보 고 서 1일 신 ① 업 체 명 고 ② 주 소 인 ③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중작 업 장 명 ⑤작 업 기 간 업 장 명 이 작업장주소	일련번호 역 외 작 업 완 료 보 고 서 1일 신 ① 업 체 명 고 ② 주 소 인 ③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중작 업 장 명 ⑤작 업 기 간 업 장 명 ⑥작업장으로 물품 반입 내역	
®신고번호 ⑨신고일자 ⑩품 명 ⑩규 결 ⑫수 량 ⑩비고	®신고번호 ®신고일자 መ품 명 መ규 격 ®수 량 ®비고	
역외작업장에서 물품 반출내역 	역외작업장에서 물품 반출내역 - 영신고번호 16신고일자 ①품명 18규격 19수량 20비고	
국외반출	국외반출	
수 입	수 입	
기타	기타	
역내반입	역대반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역외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철부서류: 2(0 mm×297mm(일반용지 60g/m(개활용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6항에 따라 역외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개활용품))	

혅 행 개 정 아 刊 77.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ㅇ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수용의견 반영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추소 추소 세관장 세관창 우편번호 우편번호 주소 취하 주소 귀하 우편번호 우편번호 ~ 점 는 선> < 절 는 선 > 관 인 생 략 관 인 생 략 ㅇㅇ세관 통관지원과 -ㅇㅇ세관 통관지원과 -체목: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송 및 폐기처분명령(통고) 체목 :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송 및 폐기처분명령(통고) 1. 우리세관 관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다음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1. 우리세관 관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다음 물품에 대하여 이래와 같은 사유로 r자유무역지역의 지청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체40조에 따라 년 월 일까지 국외반 「자유무역지역의 지청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년 월 일까지 국외반 출하거나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통고)하니 국외반출하거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 출하거나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통고)하니 국외반출하거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청된 기일 내에 국외반출 또는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접행 2. 만약 지청된 기일 내에 국외반출 또는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접행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세관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세관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군 이를 집행하게 하고 동 처분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일체를 귀하로부터 청수하게 됨을 알려 드 처분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일체를 귀하로부터 경수하게 됨을 알려 드 립니다. 립니다 1 시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1. 사람의 생명이나 채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2 부패 또는 변칠된 물품 ()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 3. 유효기(lo) 경과된 물품 () 3. 유효기간이 경화된 물품 () 4.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착해산권 침해물품 () 4.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수배산권 침해물품 () 5. 품명마상의 물품으로서 반입후 1년이 경과한 물품 () 5.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후 1년이 경과한 물품 () 6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척합하여 검사·검약기관에서 폐기대상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 6 검사 : 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 : 검약기관에서 폐기대상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 물품의 표시 물품의 표시 내외국 구분 입항일 선(기)명 반입일 B/L No. 규 격 수량/중량 장치장소 품 명 입항일 선(기)명 반입일 B/L No. 품 명 규 격 수량/중량 장치장소 구분 0 0 세 관 장 0 0 세 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